

토론회 순서

14:00 - 14:15	인사말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주제 발표	
14:15 - 14:35	발제 1.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및 관리 현황 조사결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14:35 - 14:55	발제 2.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유기동물 보호 개선 방안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
14:55 - 15:15	휴식 / 장내정리
◆ 패널 토론 (좌장 : 한진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	
15:15 - 15:30	토론 1. 국내 유기동물 보호의 정책방향 (이승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15:30 - 15:45	토론 2. 유기동물 보호소 지자체 운영 사례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15:45 - 16:05	토론 3.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실태와 대안 제시 (조윤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교수)
16:05 - 16:20	토론 4. 시민참여를 통한 보호 환경 개선 방안 (오경하 봉사하는우리들 대표)
16:20 - 16:35	토론 5. 고통사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16:35 - 16:50	자유토론
16:50 - 17:00	정리/폐식

목 차

발제 1.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및 관리 현황 조사결과 (동물자유연대)

발제 2.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유기동물 보호 개선 방안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발제 1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및 관리 현황 조사결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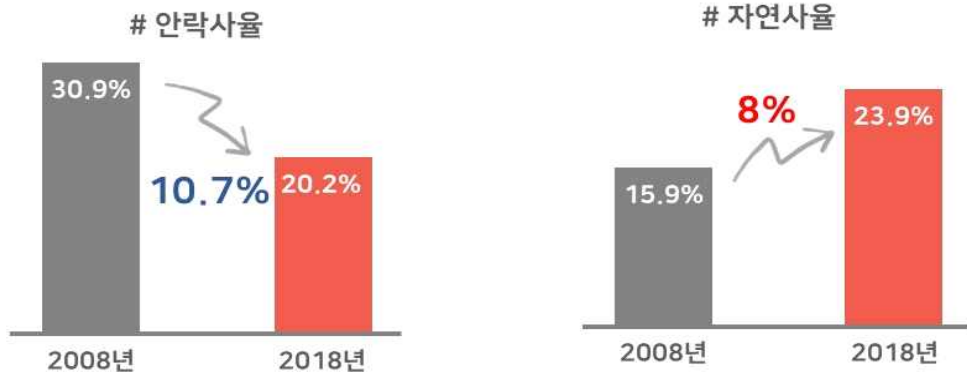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실태 조사결과

2019.12.18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1. 조사 배경과 목적

1. 조사 배경과 목적



안락사율의 감소

- 2008년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30.9%였으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0.2%로 10.7%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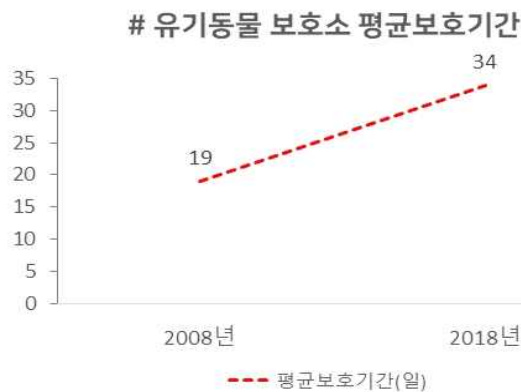
자연사율의 증가

- 2008년 자연사율은 15.9%에서 2018년에는 23.9%로 8% 증가

⇒ 안락사가 자연사로 대체,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은 46.8%(2008)에서 44.1%(2018)로 소폭 감소

2

1. 조사 배경과 목적



유기동물 평균보호기간의 지속적 증가

- 2008년 유기동물의 평균보호기간은 19일이었으며, 2018년에는 34일로 확대

⇒ 보호소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기동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3

1. 조사 배경과 목적



조사목적

- 현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및 관리 실태 파악
- 유기동물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a.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 : 2019년 3 ~ 5월(1차) / 8 ~ 9월(2차)
 - b. 현장조사 : 2019년 7 ~ 8월
- 조사 기간
 - a.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 : 전국 지자체 222곳 (보호소 시비 운영되는 경우 시·도 대상)
 - b. 현장조사 : 7개 지역 11개 보호소 (1개 지역 1개 보호소는 수범 운영 사례로 인터뷰)

4

1. 조사 배경과 목적



현장조사대상 유기동물 보호소

그룹	지역	보호소
A그룹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인천수의사회
	인천 계양구	신영재동물병원
	경기 평택	평택시 유기동물보호소
	울산 남구	사랑동물병원, 강남동물병원, 미래팻동물병원,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산 기장군	누리동물병원
	경남 김해	김해 유기동물 및 관리 협회
	경북 경산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
B그룹	세종	리얼팻 동물병원

- A그룹 : 타 지역에 비해 자연사 두수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높은 자연사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급격히 자연사율이 증가한 경우
- B그룹 :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적절한 동물 치료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5

1. 조사 배경과 목적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표

보호 상황별 개체 수

자연사

안락사

총 개체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
※ 입소동물 총 개체 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현황 파악

안락사 원인

전염성질환

회복불가/고통경감

공격성/행동장애

공고기간 종료

기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

자연사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

6

1. 조사 배경과 목적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표(계속)

입소 시 기본 검사 및 치료 항목

기본 검사 항목

(예)키트검사, 혈액검사 등

치료 항목

(예)감기, 피부병, 골절 등

응급치료 여부 및 조치 항목

응급치료 여부

예 / 아니오

(응급치료 여부 '예'인 경우)

응급 조치 항목

보호 중 기초건강관리 여부 및 내용

기초건강관리 여부

예 / 아니오

(건강관리 여부 '예'인 경우)

건강관리 내용

7

1. 조사 배경과 목적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질문표

질문항목	
Q1. 입소 시 기본 검사 및 치료 항목	ex) 키트 검사, 혈액 검사 / 감기, 폐렴, 골절 등
Q2. 응급치료 조치 항목	ex) X-ray, 저체온증 치료, 산소 케이지, 심폐소생술 등
Q3. 보호 동물 기초건강관리 내용	ex) 백신, 심장사상충, 구충, 위생을 위한 미용 등
Q4. 입소 동물 주요 특징	ex) 입소 시 건강상태 등
Q5. 동물 간 전염성 질병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Q6. 보호소 환경 및 입소 동물 관리 상황	(사진)

8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9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자연사 원인



입소시 검사 현황



치료 현황



기초 건강관리 현황



치료비 예산 현황



개체관리카드 현황

10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2015-2018) (자연사 원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세부 항목별 개체수에는 미반영)

	병사	사고/상해	고령	마상	기타	총 개체수
서울	1,754	680	43	424	851	5,705
부산	3,074	2,112	282	6,137	1,988	17,222
대구	1,177	1,479	30	1,576	1,499	5,761
인천	1,285	820	180	1,465	1,610	7,881
광주	328	502	15	3,571	255	4,671
대전	2,081	931	0	2,197	0	5,209
울산	2,390	369	9	720	149	3,637
세종	132	15	0	23	9	179
강원	2,492	588	152	728	95	4,090
경기	2,137	928	61	2,993	1,088	16,175
충북	1,225	516	75	1,121	377	3,314
충남	494	135	6	210	432	1,968
전북	2,323	422	72	1,862	523	5,491
전남	1,487	378	46	542	703	3,423
경북	2,389	656	141	467	180	4,105
경남	2,833	710	258	2,248	587	8,913
제주	35	83	0	5,053	0	5,171
합계	27,636	11,324	1,370	31,337	10,346	102,915

11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자연사 원인

- 지난 4년 간 보호소 내 전체 자연사는 102,915마리, 그중 사망원인이 분류된 개체는 82,013마리
- 자연사 원인 중 고령은 단 **1.7%**, 질병으로 인한 병사는 33.7%, 사고 또는 상해는 13.8%
- 지자체별 자연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연사율이 가장 높은 경남 사천시의 경우 입소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 (응급)치료,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지 않으며, 반면 경기 용인시의 경우 질병 및 상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 **자연사율과 동물 치료와의 상관관계 발견**

12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현황

단위 : 기초지자체 수

	신체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분변검사	방사선/초음파
실시	164	49	0	3	2	1
선별적 실시	1	59	8	15	8	4
미실시	44	101	201	191	199	204
정보부재/미답변	13	13	13	13	13	13

- 유기동물 보호소는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수용하고 있는 특성상 언제나 전염성 질병에 취약
- 유기·유실동물 역시 각종 사고와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 입소동물의 건강상 이상을 확인하거나 이미 보호 중인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검사나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 필수
- 부산 영도구는 유기동물 1,248마리 중 924마리(74%)가 자연사했지만 기본 검사/기초건강관리도 실시하지 않음
- 222개 지자체 중 육안 및 촉진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164곳, 실시하지 않는 곳은 45개. 실시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련정보가 부재한 곳은 13개소에 달함
- 신체검사/키트검사 미실시 → 질병 및 상해 확인불가 → 동물의 고통 지속

13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유기동물 치료 현황

단위 : 기초지자체 수

	호흡기질환	피부병	질병 소화기질환	식욕부진	눈·귀	전염성질환	상해 타박상	골절	응급치료
실시	64	122	67	28	34	14	113	81	174
선별적실시	38	5	10	7	15	26	7	23	1
미실시	106	81	131	173	159	168	88	104	35
정보부재/미답변	14	14	14	14	14	14	14	14	12

- 응급치료는 174개 지자체가 실시한다고 응답, 기본적인 육안 및 촉진검사를 한다고 했던 응답(164개)보다 많음
-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동일한 보호소에 위탁 중임에도 지자체별 응답 중 일부가 상이
- 인천 남동구/미추홀구는 호흡기 질환, 피부병, 상해에 대해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치료를 실시한다고 응답했지만 현장 조사결과 전염병 감염 개체가 무리에 섞여 있거나 사체가 방치되어 있어 응답 내용에 대한 신뢰 어려움
-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는 응급치료와 피부병,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마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부실이 의심되는 상황
- 특히 전염성 질병의 경우 다른 보호동물들에게 확산 우려가 있음에도 치료를 실시하는 곳은 14개 지자체에 불과

14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현황

단위 : 기초지자체 수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	사상충예방
실시	67	26	57	23
선별적실시	5	0	21	19
미실시	138	184	132	168
정보부재/미답변	12	12	12	12

- 예방접종/구충 실시 지자체는 32.4%와 35.1%에 불과했으며, 사상충 예방은 그보다 낮은 18.9%만 실시
- 서울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보호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 증강제 주사
- 보호기간의 확대에 따라 장래의 질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접종 등의 건강관리가 요구 됨
- 지방의 경우 건강 관리뿐만 아닌 기본 검사, 치료 등 수의학적 관리 수준이 대체로 열악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개별 보호소 및 관할 지자체의 관리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

15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보호동물 치료비 예산 현황

- 2018년 기준 치료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31개로, 나머지 지자체는 치료예산에 대한 확인 불가
- 31개 지자체의 보호소 예산은 3,176,891천원이며, 이중 치료비 예산은 541,434천원으로 평균 17,466천원
31개 지자체의 2018년 보호했던 유기동물수는 20,827마리로 마리당 평균 838.6원이 지출됨
- 2019년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증액 경향을 보이거나 이는 대부분 시설개보수로 인한 전체 예산의 증가로 보호동물의 치료비 항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지 않음
-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의 경우 지자체에 위탁비, 치료비를 분할 청구하기보다 필요나 편의에 의해 치료비가 위탁비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 일부 보호소는 입소 후 일정 기간 이내 폐사할 경우 위탁비를 70% 정도만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으로 이미 폐사한 입소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 야기

16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개체관리 카드 관리 현황

- 개체관리 카드 관리는 자연사하는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며, 유기동물의 건강 이상 시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에는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개체관리카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 128개 지자체 중 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재한 지자체는 단 4곳에 불과
- 공통적으로 개체관리카드 내용 및 기록의 부실 확인
- 일부 보호소의 경우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기입란에 ‘양호’라고 대체로 일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일정 기간 후 폐사

17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개체관리 카드 관리 현황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수범사례 : 진도군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전남-진도-2018-00029			
신고일	2018. 12. 13	구조일	2018. 12. 13	
2. 구조정보	신고자	문	주소(전화번호)	010-
	구조자	이대용	구조장소	진도읍 제일교회 인근
	기타			
3. 동물정보	종종	개	품종	리트리버
	나이	1~2년	중성화	O / X / 미상
	특징	털 길음, 혼돈하여 사람을 잘 따름		
4. 보호동물 사진				
5. 보호동물 관리사항	일자	내용		
	2018. 12. 14	심장사상증 및 구충제 투여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이름	생년월일
	2018년 12월 28일	주소: []	주소: []	연락처: []
		[] () 안락사 사유: []	장영	확인자: 이대용
7. 기타				

1. 관리번호	전도개사업소 2018_00013			
신고일	2018. 8. 13 (월)	구조일	2018. 8. 13 (월)	
2. 구조정보	신고자	이	주소(전화번호)	010-
	구조자	한 광 진	구조장소	진도읍 남동1길 주변
	기타			
3. 동물정보	종종	개	품종	진도개
	나이	8	중성화	O / X / 미상
	특징	희박, 혼돈		
4. 보호동물 사진				
5. 보호동물 관리사항	일자	내용		
	2018. 8. 13.	희박		
	2018. 9. 19.	심장사상증 및 구충제 투여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이름	생년월일
	2018년 10월 16일	주소: []	주소: []	연락처: []
		[] () 안락사 사유: []	장영	확인자: 한광진
7. 기타				

18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개체관리 카드 관리 현황(계속)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수범사례 : 세종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469569201800177			
신고일	2018-05-09	구조일	2018-05-09	
2. 구조정보	신고자	이**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리얼핏동물병원	구조장소	장곡면 은운리
3. 동물정보	종종	고양이	품종	한국 고양이
	나이	1살	중성화	X
	특징	약 3개월령, 피부병, 영양실조, 눈곱 낫을 심함, 순함		
4. 보호동물 사진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이름	생년월일
	2018-05-26	[] () 안락사 사유: 영양실조, 식이 거부, 서서히 악화	확인자	리얼핏동물병원
		[] () 안락사 사유: []	확인자	[]
7. 기타				

1. 관리번호	469569201800206			
신고일	2018-06-14	구조일	2018-06-14	
2. 구조정보	신고자	이**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리얼핏동물병원	구조장소	부강역 앞 도로
3. 동물정보	종종	고양이	품종	한국 고양이
	나이	1살	중성화	X
	특징	약 2개월, 교통사고 추정, 비출혈, 결막염 심함, 신경증세		
4. 보호동물 사진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이름	생년월일
	2018-06-29	[] () 안락사 사유: 식이 거부, 급사	확인자	리얼핏동물병원
		[] () 안락사 사유: []	확인자	[]
7. 기타				

19

2.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개체관리 카드 관리 현황(계속)

부실사례 : 증평군

유기동물 자연사 관리대장

관리개체번호	일 자	품 종	성 별	나 이	체 중
2018-00002	2018. 1. 5	라브라도 리트리버	암	15년령	27kg
2018-00005	2018. 2. 5	믹스	암	마 37개월령	3kg
2018-00007	2018. 2. 10	믹스 (작)	암	2개월	3kg
2018-00008	2018. 3. 21	믹스	수	3년령	4.7kg
2018-00013	2018. 3. 25	믹스	수	3년령	3kg

20

2.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개체관리 카드 관리 현황(계속)

부실사례 : 경주시

■ 동물자유연대 지원금지 (연식 2018년 1월 21일)

별지 제2호서지 (연식 2018년 1월 21일)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018-1206				
2. 구조정보	신규일	12.29		구조일	12.29	
	신고지	연관 사육소		주소(전화번호)	054-703-3112	
	구조지	K-1		구조장소	연경리출소	
3. 동물정보	기타					
	속종	개	종족	믹스	성별	♂ / 수 / 미상
	나이	3M	출생화	0YX / 미상	체중	1.72kg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₀)

보호동물 사진2(3X4C₀)

보호동물 사진3(3X4C₀)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입지	신입일	신입지	신입일	신입지		
	신입일	신입지	신입일	신입지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7. 기타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018-1063					
2. 구조정보	신규일	11.2	구조일	11.2		
	신고지	미상	주소(신뢰번호)	010-11-2		
	구조지	K-1	구조장소	경주시 석하1길 40-12		
3. 동물정보	기타					
	속종	고양이	종족	고순	성별	암 / 수 / 미상
	나이	2W	출생화	0 / X / 미상	체중	240g
4. 보호동물 사진	특징					

보호동물 사진1(3X4C₀)

보호동물 사진2(3X4C₀)

보호동물 사진3(3X4C₀)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입지	신입일	신입지	신입일	신입지		
	신입일	신입지	신입일	신입지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7. 기타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21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22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보호소 현장 조사 결과



보호소 환경



건강 관리

23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결과

	기본 검사	(응급)치료	기초건강관리	전염성 질병 관리	보호소 환경 및 입소 동물 관리 상황
경산	키트검사 (새끼강아지만)	대증치료	백신접종, 구충/사상충예방	0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개체 상태 건강
김해	X	X	X	X	사체 방치, 보호장 내·외부 파리 등 위생 상태 열악
부산 기장	X	항생제	X	X	묘사의 경우 개체를 분리해 보호 중, 캣타워 등 시설 구비
세종	필요 시 혈액/항체/ 키트 검사	대증치료	백신접종, 구충/사상충예방	0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개체 상태 건강
울산 남구	사랑, 미래펫-X 강남-O	사랑-X 미래펫-연고 강남-주사 등	사랑, 미래펫-X 강남-인공수유	사랑, 미래펫-X 강남-O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 수 십 마리 동물들 보호·관리
인천 남동/ 미추홀/계양	키트검사	X	X	X	동물 사체가 다른 개체들과 함께 방치
평택	X	X	X	X	배설물 방치로 인한 개체 주변 파리 등 위생 상태 열악

24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보호소 환경

- 11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중 6곳은 위탁 동물병원, 5곳은 위탁 보호소의 형태로 운영
- 경남 김해의 김해 유기동물 및 관리 협회의 경우 새끼 고양이 사체 2~3구가 보호장 내에 그대로 방치
- 인천 남동구/미추홀구는 철장 내 새끼 고양이 2마리와 사체 1구가 함께 방치 철장 곳곳 오래된 배설물
- 평택시 유기동물보호소 역시 배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파리 떼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 열악
- 울산 남구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 역시 공간 부족을 이유로 허피스 의심 새끼 고양이를 다른 고양이들과 합사

동물 사체 및 전염성 질환 의심 개체 방치



25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



비위생적인 보호소 내부



26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건강관리

- 동물 치료는 현장조사 대상 보호소에서 대부분 미제공, 시행하더라도 항생제 처치나 연고 도포 수준
 - 예방접종, 구충제 등 기초 건강관리 또는 인공 수유도 인력 부족의 이유로 제공 기대하기 어려움
 - 사전 진행한 전국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현황 조사결과와 현장 방문으로 파악한 실제 수의학적 처치 수준 차이 존재
- ⇒ 실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은 사전 조사결과보다 훨씬 열악
- 적절한 치료 제공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된 세종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의 경우 거의 모든 개체가 적절한 (응급)치료 충분히 제공, 새끼 고양이의 경우 하루 3~4회 인공 수유 제공

보호소 내 수액 치료 중인 동물



27

4. 민간 보호소 운영 사례 : 반려동물복지센터 ON

28

4. 민간 보호소 운영 사례 : 반려동물복지센터 ON



- 생존형 보호소의 수준을 넘어서 동물의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선진형 보호소
- 위기동물 보호에 있어 롤모델 제시
-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진형 동물복지시스템을 적용한 반려동물복지센터(경기 남양주 소재) 개관



29

4. 민간 보호소 운영 사례 : 반려동물복지센터 ON



- 최대 300마리 수용 가능한 공간에 연간 약 200마리 구조, 약 150마리 입양
- 보호공간 총 104실로 공간당 평균 2.6마리 보호
- 동물 돌봄 인력 1명 당 일평균 최소 21.5마리에서 최대 25마리까지 관리
- 구조동물 보호 및 관리시스템에 따라 위기동물 구조-관리-입양-사후관리 진행 (좌측 그림 참고)

30

4. 민간 보호소 운영 사례 : 반려동물복지센터 ON



- 매년 전 개체 대상 종합백신 및 광견병, 인플루엔자 접종
- 하절기(5월~10월) 심장사상충 예방약(내부구충 포함) 및 외부구충용 진드기 퇴치제 투약
- 동절기(11월~4월)는 격월 구충제 급여
- 센터 자체 동물병원 상시 운영하되 중증 질환의 경우 협력 병원을 통해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행

31

5. 결론 및 제언

32

5-1. 결론

지자체의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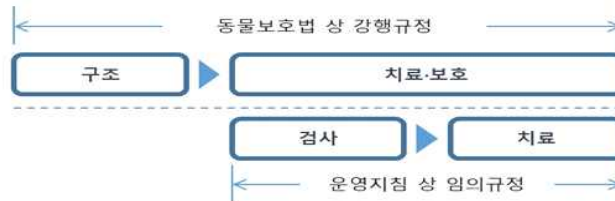
- 상당수 지자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 기본 자료조차 미보유
 - ⇒ 자연사 원인에 대하여 36개 지자체 / 검사 및 치료 실시여부 12개 지자체 정보부존재
 - ⇒ 2018년 치료비 집행내역 확인 가능 지자체는 31곳에 불과
 -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완도군 미답변
- 관련 자료 있더라도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의심 사례 존재
 - ⇒ 인천 남동구/미추홀구는 호흡기질환, 피부병 등의 치료 제공한다고 답변한 반면 보호소 측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
 - ⇒ 경남 김해시도 타박상, 골절에 대한 (응급)치료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방치된 열악한 환경
 - ⇒ 작성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필요해 보임

33

5-1. 결론

수용 위주의 보호소 운영과 규정 미비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의 구조와 제7조에 따른 치료·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강제
- 정작 행정규칙상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4

5-1. 결론

안락사에서 고통사로의 전환

- 노킬(No-Kill)정책을 선언하거나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며 안락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 유기동물 수 2006년 74,066마리, 2016년 76,054마리 대비 안락사 비율 2006년 32.4%, 2016년 23.4% / 자연사 비율 2006년 16.7%, 2016년 29.5%
- ▶ 같은 기간 안락사 비율 9% 감소, 자연사 비율 12.8% 증가



35

5-1. 결론

안락사에서 고통사로의 전환

- 유기·유실동물의 수의 1/4를 차지하는 자연사 개체 대부분 상해나 질병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치료나 고통의 경감을 위한 조치 제공 받은 것은 소수에 불과
- 안락사 감소가 보호소 유기동물의 삶 개선과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았음을 담보하지 않음



동물 보호관리의 질 저하



- 열악한 환경과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치료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36

5-2. 제언

예방 중심의 유기동물 정책 전환

- 유기·유실동물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책임감과 역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기인
- 펫샵 또는 대형마트에서 반려동물을 장보듯 '구매'하거나 가정 번식된 동물들이 지인에게 넘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
- 유기동물 정책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
-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는 상황 속 예산, 인력 등 제한된 현실에서 보호소 내 동물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37

5-2.제언

검사, 치료, 예방의 기준 설정

- 정부의 유기동물 정책은 '발생 억제'와 '최소한의 복지제공 의무화'의 방향으로
- 지자체 보호소 동물들에게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되, 이는 제도로써 보장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규정은 유기·유실동물 구조는 강제하나, 보호소 내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예산과 지자체 사정에 맞춰 판단하도록 규정 ▶ 지자체별 유기동물 관리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
-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고통을 줄이거나 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부터** 고민하여 검사, 치료, 예방의 기준을 설정

구분	대상	내용
검사	- 모든 입소 동물	- 신체검사(육안/촉진검사) - 전염병 키트 검사
치료	- 상해 - 빠른 회복이 가능한 질병	- 회복을 위한 치료 및 수술 등
	- 고통이 수반되는 중증 질병	- 고통 감소를 위한 처치
예방	- 일정 기간 이상 체류 동물	-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38

5-2.제언

각 지자체 전담 인력 구축 및 민관 협력강화 방안 모색

- 동물보호 소유 대비 인력 부재 - 각 지자체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필요
-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 보호소가 운영에 있어 시민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민간의 접근의 불가능한 곳도 다수
- 민간의 접근이 가능한 곳도 보호소 청소 및 먹이 급여 등 극히 제한된 활동만 가능한 곳이 다수이며, 운영과 관리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
-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구조 구축 필요
ex) 각 주체별 역할
 - 시민 : 임보 및 입양 활동
 - 단체 : 치료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일부 동물의 보호, 입양홍보, 사후모니터링
 - 정부 :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책임성 강화
 - 지자체 : 보호환경의 개선, 보호과정 중 민간전달체계로의 연계

39

감사합니다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유기동물 보호 개선 방안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이혜원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외국사례를 통해 본 유기동물 보호 개선 방안



이혜원 수의학 박사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
바우라움 동물병원 원장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목 차

1. 독일 뮌헨 티어하임
2. 독일 바트 칼스하펜 티어하임
3. 영국 런던 메이휴
4. 영국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5. 유기동물 보호 개선 안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민헨 티어하임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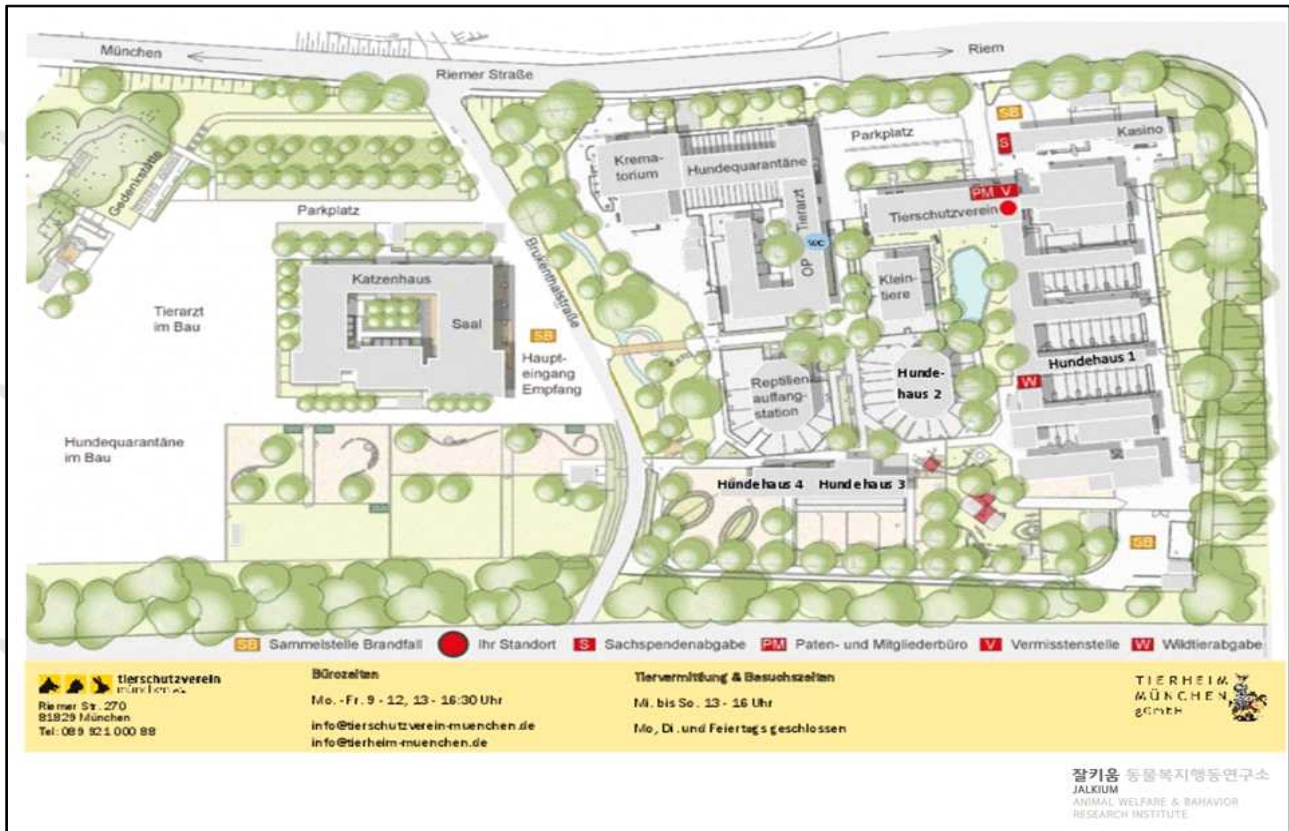
- 보호동물: 반려견, 반려묘, 설치류, 어류, 오리, 닭, 영장류 (총 600여 마리)
- 반려견의 경우 단독방, 그룹방이 나뉘져 있으며 야외공간이 제공되어 실내와 실내 활동이 가능함.
- 약 60여명이 보호소에서 동물을 케어함(정직원, 자원봉사자, 실습생, 수의사)
- (봉사 차원의) 훈련사 주기적으로 방문
- 1년 운영비 약 40~50억원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독일 민헨 티어하임

- (구) 반려견 방 실내: 4.8m² 실외: 7.7 m²
- (신) 반려견 방 실내: 7.5 m² 실외: 10x15m
- 반려묘의 경우 사회성이 좋으면 5마리까지 그룹방에서 생활, 반려묘 당 최소 8 m²
- 반려묘 실내 온도: 20~22도
- 동물병원 건물 별도로 운영됨(수의사 총 3명)
- 입소 시 격리실(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우선 보살핌.
- 질병이 있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보호동물은 개별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입소하는 반려견 및 반려묘 모두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있음.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입양책임비

반려견

생후 12개월 이상	300,00 €
생후 12개월 이하	350,00 €
생후 4살 이상	200,00 €
생후 10살 이상	nach Absprache

반려묘

	100,00 €
mit besonderen Anforderungen	nach Absprache

Kleintiere

Kaninchen	50,00 €
Meerschweinchen	40,00 €
Ratte	20,00 €
Mäuse	10,00 €
Hamster	10,00 €
Degus	20,00 €
Streifenhörnchen	60,00 €
Frettchen	60,00 €
Chinchilla	50,00 €

연구소
JGR

뮌헨 티어하임



뮌헨 티어하임



민헨 티어하임



바트 칼스하펜 티어하임

• 개요

- 2003년 개소
- (전) 유럽동물자연보호협회 소속
- (현) 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
- 면적: 3.7 ha
- 반려견 100마리, 반려묘 100마리 수용 가능
- 입양책임비: 반려견의 경우 수컷 220Euro, 암컷 270Euro, 노령견의 경우 협의, 반려묘의 경우 성별 상관없이 100 Euro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바트 칼스하펜 티어하임



바트 칼스하펜 티어하임



바트 칼스하펜 티어하임



영국 런던 메이휴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영국 Mayhew Animal Home

- 위치: 영국 런던 켄살그린 텐마가든 NW10 6BJ Trenmar Gardens, Kensal Green, London, NW10 6BJ, UK
- 설립연도: 1886년
- 홈페이지: www.themayhew.org
- 직원수: 약 60여명
- 개요: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물복지기관 중 하나
- 주요 업무: 런던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홍보, 학대 및 유기동물 구조 및 재입양, 양로원이나 알츠하이머 노인 대상의 반려동물 매개 치료, 제3국가에 광견병 접종 지원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런던 메이휴

- 대부분의 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의 보호소들은 시외에 있으나 메이휴 동물보호소는 런던 시내 안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또는 저가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내장칩, 구충제를 제공하고 있음.
- 보호동물들에게 개인방 제공 (한마리당 1실)
- 적극적인 런던 도심 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활동.
-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이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음.

<반려견 보호 관련 특이점>

- 사람과 한지붕 아래에서 살게 될 때를 대비하여 방마다 텔레비전을 설치해놓음
-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를 진행함
-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난감 제공
- 1일 최대 3회까지 개인방에서 나와 놀이터 또는 산책 진행
- 사회화에 필요한 교육 별도 진행
- 반려견 입양비는 125파운드 (한화 약 19만원)임.
- 입양시 중성화와 내장칩을 필수로 함.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 메이휴 반려묘 관련 특이점:

- 손을 전혀 타지 않는 개체가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 방문객이 들어갈 수 없는 개별적인 방 안 케이지에서 입원해 있음.
- 사람의 손을 개체의 경우 매일 자원봉사자가 방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대한 사회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쓰다듬어줌.
- 질병이 있는 개체는 처방식 사료를 제공할 정도로 세분화된 케어가 제공됨.
- 고양이 입양비는 75 파운드(한화 약 12만원)임.
- 입양시 중성화와 내장칩을 필수로 진행함.
- FIV, FELV 에 감염된 개체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동물보호소 내 동물병원 특이점:

- 수의사 4명, 간호사 8명으로 이뤄짐.
- 동물병원 운영은 단체의 후원금으로 진행됨.
- 운영시간은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임.
- 수의학과 학생들의 실습이 가능하며 2018년 기준 24명이 실습완료함.
- 중성화 수술을 오전에 진행하고 늦은 오후에 퇴원하는 방식을 취함.
- 보호동물이 입소하면 일반검진을 진행하고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내장칩삽입은 필수로 진행함.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런던 메이휴



런던 메이휴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런던 메이휴



런던 메이휴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Welcome to



Southridge Animal Centre

- Please make sure that your children are closely supervised at all times.
- Please do not feed any of our animals, they are all fed regularly and many are on special diets.
- Please do not take your own dog into any kennel block. This upsets the kennelled dogs.
- Please keep your own dog on a lead at all times.
- Do not put your fingers into the animal's pens.
- If your own animal fouls, please clean it up.
- Please be quiet around our animals, sudden noise (especially from children) frightens them.
- Please use the litter bins provided, discarded litter harms wildlife.
- There is a no smoking policy in all buildings.
- Please comply with all notices around the site, especially no entry signs.
- WASH YOUR HANDS AFTER TOUCHING ANY ANIMAL

Enjoy your visit and we hope that you find the pet that you are looking for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 위치: RSPCA Southridge Animal Centre, Packhorse Lane Ridge
POTTERS BAR EN6 3LZ
- 보호동물: 반려견, 반려묘, 페렛, 말, 돼지, 토끼, 닭
- 보호소 내 주요 사항:
 - 보호소 방문 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함. 단, 목줄은 필수이며 보호동물이 있는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 없음. 동반 반려동물의 대변은 보호자가 반드시 치워야 함.
 - 보호동물을 만졌을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 보호견 건물은 총 4채이며 A, B, C, D Block으로 나뉨.
- 보호묘 건물은 총 2채이며 left와 right Wing으로 나뉨.
- 보호견 운동장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견은 교대로 운동장을 이용함.
- 보호견은 기본적으로 한 마리당 1실을 사용함.
- 보호묘의 경우 동배의 형제 및 자매일 경우에는 그룹으로 방을 사용하나 성묘일 경우 한 마리당 1실을 사용함.
- 자원봉사자가 보호견의 산책을 담당하며 보호묘의 사회화를 위하여 터치 훈련이 진행됨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보호소 내 중요 요소

- 위생상태 유지를 위해 청소가 용이한 재질의 바닥과 벽을 갖춰야 함.
- 질병이나 전염병의 개체들은 격리하여 치료하여야 함.
- 개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 개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개체가 보호되고 있는 방 앞에 항상 비치해놓음.
- 방문객이 별도의 먹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중성화, 예방접종, 구충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RESEARCH INSTITUTE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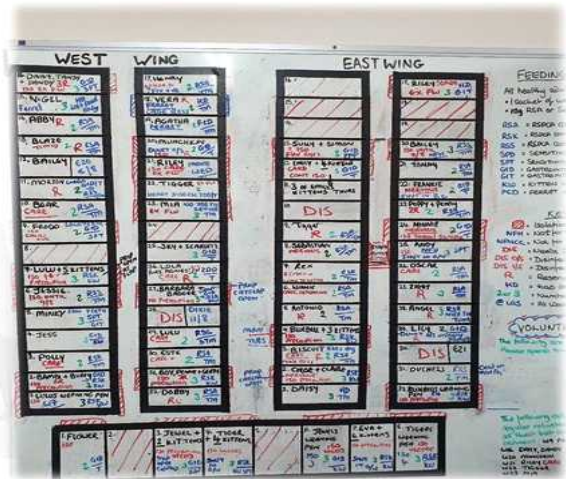
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유기동물 보호 개선 안

- 위생 관리
- 건강 관리
- 영양 관리
- 기본적인 욕구 충족
- 보호 동물 정보 기록화
- 스트레스 완화
- 사회화
- 환경 풍부화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RESEARCH INSTITUT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812-01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다운로드:
온-나라 정책연구
www.prism.go.kr

총괄(주관)연구기관	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혜원 원장

2019. 03. 19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감사합니다



잘키움 동물복지행동연구소
JALKIUM
ANIMAL WELFARE & BEHAVIOR
RESEARCH INSTITUTE

토론 1

국내 유기동물 보호의 정책방향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이승환



□ 유실·유기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 방지, 구조·보호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임

○ 지자체에 구조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속 증가 중이고, 재입양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임

*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 : ('16) 89,732마리 → ('17) 102,593 → ('18) 121,007

'18년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 : (재입양) 27.6%, (자연사·안락사) 44.1

○ 그간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유기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해 왔음

- 동물등록 누락 최소화를 위해 등록 기준 월령이 '19.3월부터 2개월령으로 조정되며, 비문 등 바이오 인식 방식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 개발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를 의무화, 동물유기 처벌을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 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음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위해 '08년부터 시설 설치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18년 부터는 입양비, 구조·보호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 ('14) 25 → ('16) 31 → ('18) 43

-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 구조·보호비 등(백만원) : ('18) 1,536 → ('19) 2,296

□ 사설동물보호시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겠음

○ 첫째,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음

- 사설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 사설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을 금지하고,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사설보호시설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예시)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 지원

○ 둘째, 지자체 시설·인력기준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 동물별 수용공간 크기 의무화 등 시설·인력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셋째, 유실·유기동물 구조 체계를 개선하겠음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마지막으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토론 2

유기동물 보호소 지자체 운영 사례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토론 3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실태와 대안 제시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조윤주



보호소 동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vs. 삶의 양(Quantity of Life)

동물복지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현재 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의 복지가 무시당한 채, 대중들에게 성적표처럼 쏟아지는 안락사비율, 폐사비율, 입양률 등 숫자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호소 동물은 반려동물로써 개체별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관리하고 제한된 자원을 고르게 배분하여 많은 동물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리방식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주어진 윤리의식과는 다른 형태로 인도적인 처리, 수의학적 치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수의사를 비롯하여 업무담당자, 개인활동가들은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대중의 시선까지 더해져서 점점 더 인도적인 처리를 거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 동물보호소, 다시 말해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제한없이 입소시켜야 하는 개방형 입소방식을 가진 보호소에서조차 인도적인 처리의 기피(심지어 no-kill을 비전으로 삼은 지자체 동물보호소도 있음)는 폐사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도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사례 세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많은 시민은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데려가는 것은 평생 살 집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보호소동물의 처리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동물들이 보호받는 공간은 아니다. 이로 인해 동물보호센터는 입소한 동물을 죽인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 위탁을 맡은 경우는 안락사의 시점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관리중폐사(자연사)를 선택하게 된다.

2.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것이지만 동물의 삶을 끝내기 위해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부 임상수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안락사를 권하기보다 보호자와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로 위탁받은 동물병원에 보호 중인 구조·보호동물이 폐사하는 경우는 이러한 배려를 받을 수 없으며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고통 속에서 죽는다.
3. 개농장에서 구조한 동물보호활동가는 호흡이 어렵고 복수가 찬 어미 개와 젖먹이 강아지 3마리를 보호하게 되었다. 활동가는 어미 개를 지역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심장사상충검사, x-ray검사, 복수천자, 입원비, 수액비, 정맥주사비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지불하였다. 심장사상충증 4기 판정을 받았고 모금 활동을 통해 어미 개의 심장사상충 제거 수술을 실시하였다. 어미 개가 입원한 동안 젖먹이 강아지는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고 세 마리 모두 폐사하였고 어미 개 역시 수술 후 폐사하였다.

모든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당사자(수의사)에게 스트레스이며 연민에 대한 피로감(compassion fatigue)이 누적된다. 주관성을 없애고 일관성 있는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인도적인 처리는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준비하여 감정적인 언어는 자제해야 하며, 실행에 옮기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4

시민참여를 통한 보호 환경 개선 방안



□ 유기동물 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다.

- 보호소 입소후 절반은 사망하는 현실

⇒ 08년, 10년이 지난 18년 모두 사망률은 여전히 40% 중반

⇒ 안락사율이 줄어든 만큼 자연사가 많아졌다.

‘안락사’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함으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자연사 되는 개체는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 직영보호소보다 위탁보호소가 많은 현실에서 고통사는 줄어들지 않을 것

⇒ 1개체 당 책정된 예산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기간이 경과한 개체에 대한 책임은 보호소에서 부담하여야 함.

⇒ 위탁보호소에서는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 동물복지예산의 증가와 사망률

- 동물복지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관련 비용이 시설개선비나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

⇒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치료비나 인건비로는 사용되지 않음.

□ 개선 방향

- 입소하는 숫자는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안락사, 자연사를 포함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두 번째이다.

- 예산산정시 치료비를 별도 책정

⇒ 입소시 예후 불량한 개체는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되는 개체는 일정수준에서 치료 지원하는 가이드 마련
(예: 봉합, 절단, 단미 등 외과적인 처치와 전염병 키트 검사 등)

- 보호기간이 지난 보호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 보호소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난 개체에 대한 비용 및 인력의 문제로 방치하는 경우 발생

⇒ 잘 관리되던 개체를 안락사한다는 것은 수의사나 관리직원에게도 어려운 일
⇒ 별도의 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면, 치료가능한 보호소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2차보호소)

○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동물보호단체의 참여유도

⇒ 보호기간이 지난 개체에 대한 관리에 봉사 적극 참여로 관련 비용 절감효과

○ 해외 입양진행을 위한 지원

⇒ 국내입양이 어려운 개체의 해외입양을 진행하는 동물단체들이 있으나 그 서류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입양률이 높아지면 사망률은 자연히 감소

○ 보호소에 입소하는 개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 대부분 대형견이나 믹스견이 입양의 어려움으로 고통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유기견이 될 확률이 높은 시골개나 마당견의 중성화수술을 무료로 하는 방법이나 광견병 주사를 무료로 실시할 때 중성화수술한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
강구

토론 5

고통사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송시현



1. 들어가며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센터들이 기본적인 신체검사(육안·촉진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센터들은 유기동물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¹⁾ 그 결과 보호 동물이 고통 속에 방치되다 자연사 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들이 위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하, 동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보호 동물들이 구조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스럽게 죽는다면 그 동물들을 구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기동물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도 제공하지 않아 고통사 하게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이 위와 같이 운영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을지 함께 검토해보려고 한다.

2. 관련 법령 현황

동물보호법(이하, 동보법)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보호조치의 내용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는

1) 기본적인 신체검사(육안, 촉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호소가 전국 222개 보호소 중 44개였으며, 모든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한 보호소는 19개였다(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2019, 36 - 50면 참조)

것,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것 등이다.

그 외 적합한 사육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별표1의 1. 일반기준 나. 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 개별기준 나. 에 의하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3. 보호동물에 대한 치료 미제공의 법적 문제

동보법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보호센터들이 기본적인 신체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유기동물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방접종 및 구충제 급여의 경우 실시한다는 곳이 각각 32.4%, 35.1%에 불과한 정도이다.²⁾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기본적인 신체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어떠한 치료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예 동물을 치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동보법 제7조에 위배되며, 동보법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보법 취지에 맞게 운영

2) 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2019, 61면 참조.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보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시정명령을 위반한 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동보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미흡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력해야 한다는 동보법 제7조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운영지침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3호), 예방접종 및 구충의 경우에도 센터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제14조), 치료 우선순위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제16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4. 입법과제

가. 보호조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보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 그 동물을 구조하여 동보법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신속한 치료 및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즉 현재 동보법 제14조와 제7조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보호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및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7조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해당 규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보법 제14조가 의무 조항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제7조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제7조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소유자 등에게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위와 같이 개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제14조 자체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호조치의 내용으로는 보호동물의 상해, 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전염병 예방 조치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자체장의 보호조치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운영지침의 경우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동보법 제14조의 취지에 맞추어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의 경우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접종 및 구충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행하도록 항목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료의 우선순위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나. 보호동물의 치료 제공 범위

보호동물의 치료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동보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신속한 치료 및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 전반에 대한 치료를 그 치료 범위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다만, 현재 동물보호센터들의 운영 현실과 예산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전반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위급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급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최소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치료까지는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운영지침 제16조에서는 단기간의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개체나 누군가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개체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치료 순위에서 밀려 결국 고통 속에 사망하게 될 수 있다.³⁾ 이는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예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료 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입양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치료 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동물의 고통 경감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치료의 시급성 등을 따져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 지자체 소유권 취득 전 보호동물의 치료 가부

보호동물의 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보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타인의 사유재산인 동물을 임의로 치료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소유자 등이 아니더라도 동보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보법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의무로 바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치료를 실시한

3) 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2019, 11면 참조.

경우 지사체장이 동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치료행위를 통해 동물의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해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치료행위상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사실 유기동물의 고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동보법 시행규칙과 시설기준에 맞는 보호소의 수용환경 개선, 치료비 예산 확보 및 관리·감독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에서는 일단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중 치료 제공과 관련한 법적 이슈와 입법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위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싶다.

구조된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오히려 질병 또는 상해로 고통받다가 자연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조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이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 유기 동물들의 보호소 내 고통사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

MEMO



MEMO



MEMO



MEMO

